FTA 100% 활용하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FTA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제언

명재호 | 관세사, 물류관리사

명재호
관세사, 물류관리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 FTA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제언

향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이 단순히 수출금액, 수출건수 증가라는 양적팽창 기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수익성이 담보되는 질적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미용, 의류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수출품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하이테크 IT제품, 신소재, 친환경 자동차부품 등 상대적으로 경량이면서도 고품질, 고가에 해당하는 고부가가치 품목을 지속 발굴하여 실제 수출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세전환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부가가치 품목으로의 추세전환에 발맞추어 그 동안 전자상거래 수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도외시 되어왔던 FTA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수출의 질적성장을 지속적으로 꾀하여야 한다.

1장. 위기는 곧 기회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은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재택근무 확대,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으로 유일하게 폭발적인 성장을 구가한 분야가 있으니 바로 "전자상거래 (e커머스)" 시장이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금융기업인 페이오니아(Payoneer)가 글로벌 크로스보더[1] 이커머스 시장동향을 분석한 '2020년 1분기 글로벌 셀러 인덱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2])'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향후에도 K-방역, K-뷰티 등에 따른 판로 확대로 시장의 빠른 확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중국도 역직구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 미국과 영국은 53%나 증가하였고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의 국가도 수출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85%(이탈리아), 13%(프랑스), 30%(스페인)로 크게 증가하는 등 유럽 이커머스 시장 또한 코로나19 이후 회복차원을 넘어 호황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는 전 세계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비대면·원격사회로의 전환, 전 세계 유통망의 디지털화를 앞당기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본격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

1) Cross Boarder: (국경간공급)으로 경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서비스 공급 형태의 하나. 세계 무역기구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정의되어 있으며 생산이 완료된 서비스 제품이나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국경 간 이동을 통하여 공급된다.

2) 해외 소비자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형태로 국내 소비자가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직구(직접 구매)와 역(逆) 방향의 구입 형태인 전자상거래 수출을 의미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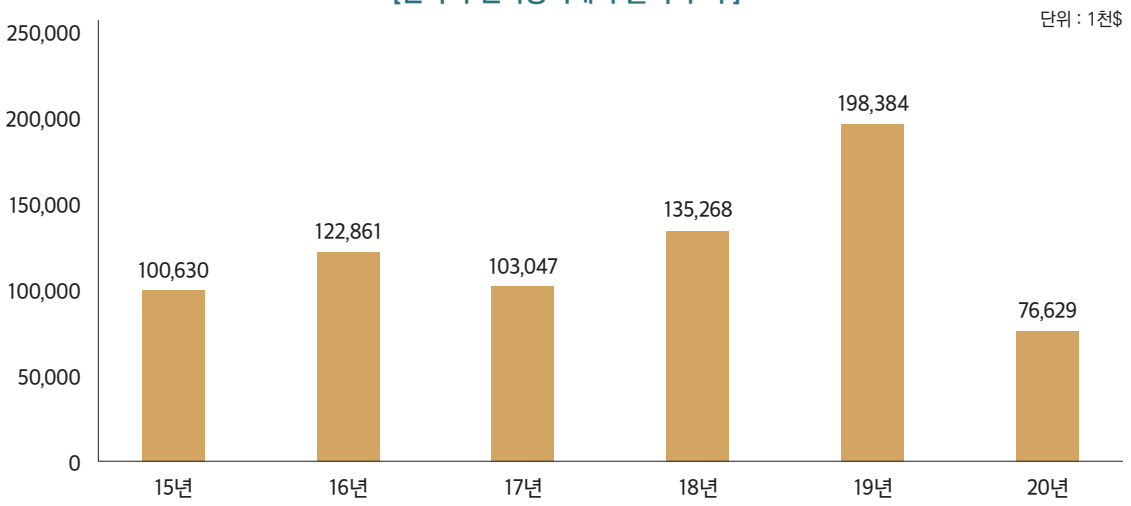

※ 20년은 1분기 해당수치

2장. 우리정부의 전자상거래 수출 진흥 방안

우리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다양한 비대면·원격 서비스의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해 산업기술 역량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도 “전자상거래·물류” 분야를 10대 규제 집중 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최근 무역 유관기관들은 이러한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중소기업의 화상상담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에 치중한 수출 지원책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게 올해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 체제”를 선보일 예정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이 개통되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판매내역 등을 수출신고서로 간단히 변환, 세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주문취소 등에 따른 신고정정, 반품 절차도 크게 간편해지고, 국세청과의 수출자료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자상거래 수출은 전자상거래 전체 교역 금액 중 약 1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러한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정책과 잘 맞물릴 경우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 질 것임은 기정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항상 고통이 뒤따르듯 관련 통계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인데 전자상거래 수출금액, 수출건수 등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 면에서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수출자의 채산성 악화를 야기하는 등 자칫 “속빈강정”으로 전락할 리스크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전자상거래수입“인 직구분야는 지난 수년간 급격한 수입단가 변동이 없어 급락추세인 수출단가와 비견되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수출 채산성 악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아마존, 이베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에서 가격경쟁심화, 수수료 및 부대비용 인상 등으로 인한 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의 대부분이 저가품목에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 수출의 대부분은 저가의 미용, 의류 품목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수출액, 수출건수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장품을 살펴보면 수출건수로는 전체의 39% 비중이나 금액기준으로는 27% 수준에 머물러 채산성 악화 심화추세를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 수출입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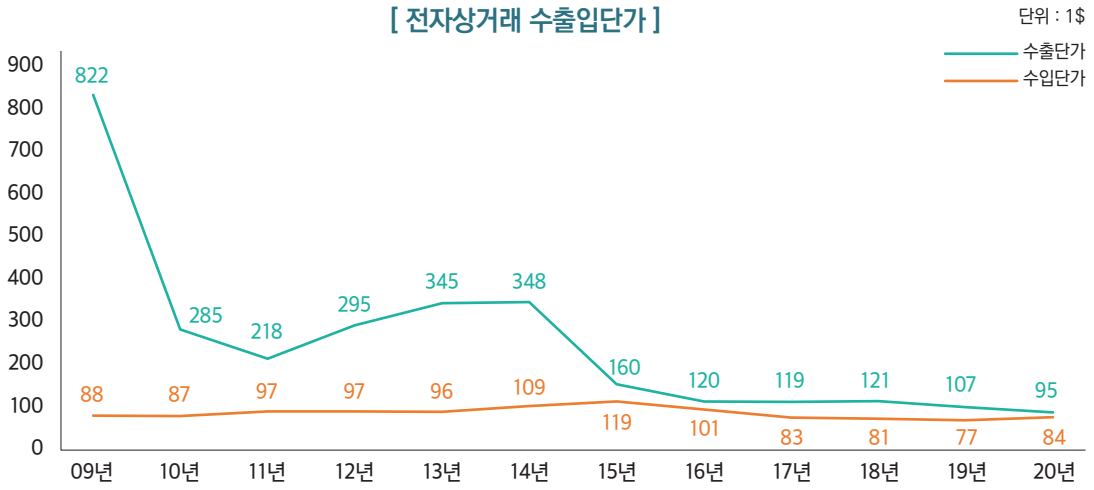

※ 20년은 1분기 해당수치

[전자상거래 수출품목별 수출액 및 수출건수]

(단위 : 1$ / 기간 : 20년 1~4월)

NO	HS	품목명	수출액	비중	수출건수	비중	수출단가
1	3304	화장품	20,420,455	27%	352,635	39%	58
2	6211	트랙슈트/기타의류	5,835,341	8%	90,817	10%	64
3	6109	티셔츠	4,532,263	6%	106,161	12%	43
4	6204	여성용 슈트/바지	4,313,869	6%	80,337	9%	54
5	6106	여성용 브라우스	2,743,129	4%	18,816	2%	146
6	8471	PC 관련 용품	2,501,887	3%	5,829	1%	429
7	3305	두발용 제품류	2,168,535	3%	48,401	5%	45
8	6201	남성용외투	2,002,352	3%	25,724	3%	78
9	3926	기타 플라스틱 제품	1,733,493	2%	19,432	2%	89
10	6110	저지/풀오버/가디건	1,614,858	2%	24,821	3%	65

※'20년 전자상거래 총 수출액 : 76,628,574$ / 전자상거래 수출건수 : 910,580건 / 비중 : 총 금액/건수 比 해당품목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이 단순히 수출금액, 수출건수 증가라는 양적팽창 기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수익성이 담보되는 질적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미용, 의류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수출품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하이테크 IT제품, 신소재, 친환경 자동차부품 등 상대적으로 경량이면서도 고품질, 고가에 해당하는 고부가가치 품목을 지속 발굴하여 실제 수출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세전환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부가가치 품목으로의 추세전환에 발맞추어 그 동안 전자상거래 수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도외시되어왔던 FTA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수출의 질적성장을 지속적으로 꾀하여야 한다.

3장. FTA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수출 진흥방안 제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물류·전자상거래의 변화로 가격이나 부피, 질량 등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교역으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도 저가, 경량의 개인용품 위주에서 고가, 중량물 등 일반물품으로 추세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국 통관 時 관세감면 여부가 가격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수출국가별 소액관세 면제기준과 FTA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기준 등을 잘 분석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별 소액 관세면제 기준 이하의 수출물품은 관세부담 자체가 없으므로 FTA 활용 대상은 아니지만 최근 소액면세 기준을 악용한 관세 불성실 신고 등의 탈세문제에 대하여 전 세계 관세당국이 규제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EU의 경우 2019년부터 소액 관세면제 기준을 폐지[3]하고 EU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VAT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등의 정책변화가 감지되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액 관세면제 기준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도 FTA 활용여부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가별 소액 관세면제 기준은 초과하되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출물품 (예: 미국 200$초과 1,000$이하)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FTA 체약국으로부터 수입된 사실여부 정도만 확인되면 FTA 협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자는 각종 매입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를 유통단계에서 충분히 확보, 보유하고 수입자나 수입국 관세당국 제출요구 時 이러한 증빙자료를 영문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주요 관세당국 전자상거래 전담 조직제도 개편동향 연구 6page (관세청/19.12)

[수출국가별 관세면제 /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기준]

구분	소액 관세면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기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관련규정
미국	USD 200 이하 (특송)	USD 1,000 이하	협정문 6.16조
멕시코	USD 50 이하	-	-
캐나다	USD 15 이하	USD 1,000 이하	협정문 제4.3조
EU	EUR 22 이하 (19년 폐지)	EUR 500 이하	협정문 제21조
호주	AUD 1,000 이하	AUD 1,000 이하	협정문 3.19조
중국	관세액 RMB 50 미만	USD 700 이하	협정문 3.19조
베트남	100만동 (특송)	USD 600 이하	협정문 3.17 조

※중국의 소액관세면제는 산출 관세액이 50RMB 미만인 경우 행우세 부과를 면제하는 징수최저액 개념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 체제"기능 중 판매내역을 수출신고서로 변환하는 것 외에도 수출자가 국내 생산자로부터 매입한 내역까지 연동시켜 매입증빙 자료를 원활히 보관관리하고 향후 원산지검증 대응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FTA협정문상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기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 종류, 유형, 양식 등의 세부규정은 없으므로 관세당국간 협의를 통해 국가별로 이를 구체화하고 명문화할 필요성 또한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을 초과하며 FTA 적용의 실익이 있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FTA협정 적용이 필요한데 일반 수출의 경우에는 다년간의 정부지원 및 계도와 민간기업 차원의 업무 프로세스 구축 노력, 다년간 원산지 검증 대응이력에 따른 노하우 축적으로 원산지관리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져 왔다 할 것이나 전자상거래 수출자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영세단위 사업형태, 저가위주 수출물품 구성으로 FTA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전자상거래 수출에 특화된 FTA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조달형태 중 많은 부분이 수출자가 G마켓, 옥션, 11번가 등 국내 대형 오픈마켓[4]에서 매입 후 이를 되파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해당 수출자가 대형 오픈마켓이나 실제 생산자를 접촉하여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는 등 원산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정책적인 뒷받침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자와 생산자 사인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을 상회화는 물품 거래시에는 계약서상 생산자의 원산지확인서 제출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이 된다.

넷째,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전략은 우리나라와 수출상대국의 FTA 발효 여부 및 해당 수출상대국의 국가별 구매패턴, 특성, 취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선별하여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2020년 1~4월 기간 동안 국가별 전자상거래 수출현황을 수출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포르, 대만 순으로 집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별 전자상거래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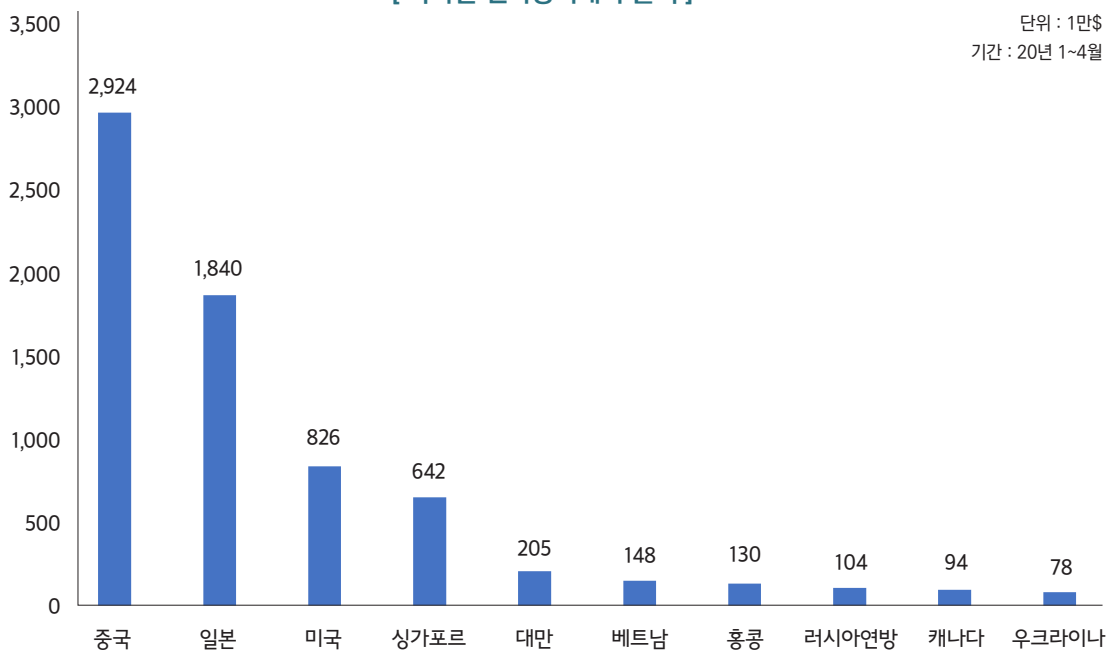

4) 중간 유통 마진이 없을 뿐 아니라 같은 상품에 대한 복수의 판매자가 가격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 쇼핑몰보다 저렴하며 G마켓, 11번가, 옥션, 이베이 등이 있음

[국가별 전자상거래 수출단가]

단위 : 1$
기간 : 20년 1~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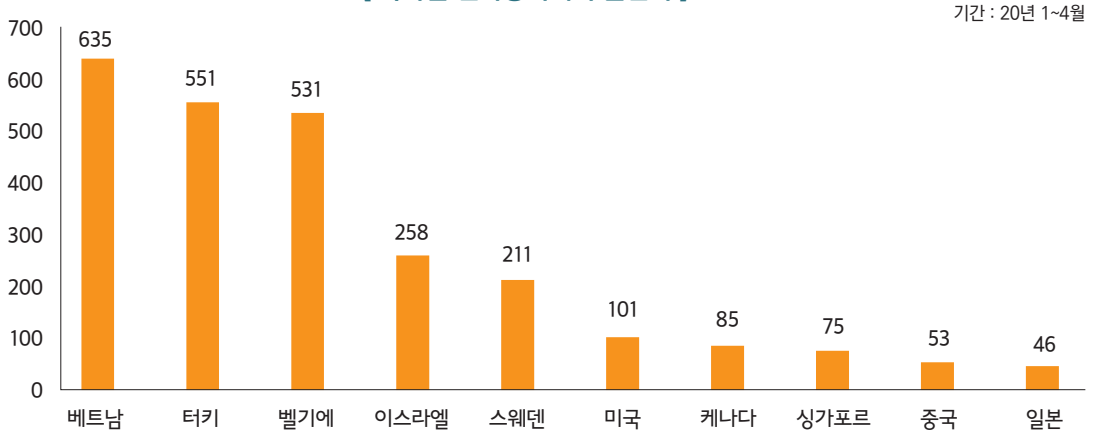

하지만 이를 수출단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수출금액 기준으로 상위에 포진한 국가 대부분은 수출단가가 100$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베트남, 터키, EU 회원국, 이스라엘에 대한 수출단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포진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국가 모두 우리나라와는 FTA가 발효되어 있는 국가이므로 이러한 국가별 구매패턴을 잘 분석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위주 수출물품 구성 및 FTA의 전략적 활용이 동반된다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자상거래 수출신고時 간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여하고 있는 혜택은 관련 규정[5]에 따라 물품 가격 200만원(FOB 기준) 이하 물품에 한정되어 있어 고부가가치 상품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수출하는데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규정은 기존의 간이수출신고 규정[6]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확대 등 현재의 트렌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 허용 금액기준 상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특송업체를 통한 목록수출통관이나 우체국 EMS(Express Mail Service)[7]를 활용한 수출통관시에도 수출실적 불인정, 관세환급 불가 등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금액 상향과 동시에 특송이나 우체국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형태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을 인정하고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5)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제35조의 2(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
6)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제36조1항8호(간이수출신고)
7) 국제특급우편물서비스 전 세계 우편 관련 기관의 연합체인 만국우편연합의 협정 아래 발송되는 국제택배 서비스

[수출신고 유형별 구분]

구분		수출실적 인정	관세환급 가능	신고 항목
정식수출신고	전자상거래 수출	O	O	57개
간이수출신고 (FOB 200만원 이하)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33개
	목록통관 (특송)	△	X	17개
	목록통관 (우편)			

"전자상거래 (e커머스)"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조류이자 미래 대한민국의 수출입 생태계를 좌우할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이미 수출건수 기준으로는 2020년 전체 수출건수 대비 전자상거래 수출건수가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무역 비대면 활성화로 확대규모는 향후에도 더욱 증폭될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적팽창 보다는 질적팽창을 추구하여 "수익성"이라는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부를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